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1. . .	
연월일	(제 회)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령군수 (재무과장)
제출연월일	2021. . .

법무통계담당 심사필

『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1. 5. .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군세 감면이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 사항

- 1)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공동명의자 범위를 확대(안 제2조)
 - 기존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 확대 : 기존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 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
- 2) 상위법 이관에 따라 불필요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현행 제3조 삭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21년부터 경감률 직접 명시(제38조제4항제2호)
-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이관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안 제6조)
- 4) 감면 제외대상 인용 규정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7조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 반영(안 제12조)

나. 일몰이 도래한 조항의 감면기한 연장(3개조항)

- 1)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2)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3)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 특례제한법」

나.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1.3.19.~4.8. / 해당없음

다. 예산관련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 분석 결과 : 해당없음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를 “장애인과 「지방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4항에 해당하는 사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을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을 “법 제78조의3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

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으로 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을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

----- 2023년 12월 31일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 법 제78조의3제12항 -----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2023년 12월 31일 -----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2023년 12월 31일 -----
-----.

제12조(감면 제외대상) -----
-----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관 련 법 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2.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무과	
연 락 처	054-950-6121